

공유경제와 지식재산* **

계 승 균***

- | | |
|-------------------------------|----------------------------|
| I. 들어가면서 | 1. 지식재산과 공유경제와의 접점 |
| II. 공유경제의 의미 | 2. 공유경제 지향 법제도 |
| 1. 의 미 | 3. 공유경제이념과 부합되는 실천적
인 면 |
| 2. 공유경제와 상업경제 | 4. 공유경제이념에 부합되는 이론적
지원 |
| III. 지식재산권의 의미 | 5. 플랫폼 역할에 대한 감시 |
| 1. 지식재산권의 성격 | 6. 시사점의 등장 |
| 2. 권리자보호 위주의 법률규정과 법
이론 구성 | |
| 3. 최근의 경향 | V. 나오면서 |
| IV. 공유경제와 지식재산 | |

* 본고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가 2017년 9월 5일에 공동주최한 학술대회에서의 발제문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발제 시 좌장을 맡아 주시고 귀중한 의견을 주신 정상조 교수님, 토론을 해 주신 이원복 교수님, 임광섭 박사님, 이주연 부연구위원님, 류태규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과 의견제시를 통해서 본고의 내용이 수정, 보완되었습니다.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초 록

본고는 공유경제와 지식재산제도와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 것이다. 공유경제는 경제사(經濟史)적으로 의미가 있고, 이념적으로는 자본주의의 폐해성, 즉 자원낭비, 효율적이지 못한 경제 현상 등에 대한 자기반성에서 출발하였지만, 소유권제도를 부정한다든지, 모든 재산을 통제하고 사회 전체의 공유로 하자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다른 한편, 지식재산제도는 기술과 과학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활용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공유경제와 지식재산제도는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요즘은 회자되는 제4차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등과 공유경제, 지식재산제도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지식재산이 발전함에 따라 그동안 지역적이고 이념적인 공유경제가 글로벌화되고, 더욱 활성화되어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제도는 다른 재산권, 예를 들어 유체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소유권과는 달리 지식재산의 속성상 공유경제의 이념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의 제한, 특허권의 강제실시, 보호기간제도, 공공저작물, 오픈 소스, 클라우드링, 지식의 공유를 의미하는 도서관제도 등 지식재산에는 내재적으로 공유경제의 이념과 일치하는 부분이 다른 재산권과 비교해 보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지식재산제도도 공유경제의 이념에 가능하면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지식재산제도의 독점성에 대한 재검토, 권리소진 이론에 대한 재검토, 플랫폼역할에 대한 관리와 감시 등 몇 가지 쟁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공유경제, 지식재산, 제4차산업혁명, 권리소진이론, 특허권, 저작권, 플랫폼

I. 들어가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화두가 제시되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공유경제(共有經濟, the Sharing Economy)¹⁾가 아닌가 생각된다. 우버 택시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업과 관련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언론 보도도 많이 되었다. 비단 공유경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고, 경제사적인 의미에서도 새로운 경향이라고 생각된다.

공유경제는 요즈음 사회에서 자주 회자되는 혁신이라는 개념과 일치하는 면도 있다. 즉 기존의 어떤 제도의 틀을 깨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질서를 형성하자는 의미여서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규범적 질서와 충돌하는 점이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공유경제를 논의할 때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공유경제는 독점적 성격과 배타적이라는 속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권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권리관계나 권리자와의 충돌이 발생하고, 행정청이 그동안 해 온 각종 규제행정의 완화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²⁾

한편, 공유경제는 지식재산권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지식재산권제도는 기본적으로 독점적이고 배타적 성격의 권리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가장 중요한 자산에 속하기도 한다. 권리로서의 속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도,

1) 공유경제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공유경제의 의미가 '소유의 공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최진우, "공유경제의 등장과 규제 이슈", 한국정보법학회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한국정보법학회, 2014; 이성엽,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 『행정법연구』, 제44호(2016); 우리나라에서 공유경제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법령은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이다. 조민석·이덕환, "새로운 형태의 공유경제와 현행법 사이의 충돌문제", 부산관례연구회 하계세련회 발제문, 2016.

또한 권리의 대상과 유형, 내용의 변화가 심한 것이 지식재산권 분야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지식재산권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각광받는 재산권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본 논문에서는 공유경제와 지식재산제도와와의 연관성 내지 접점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두 제도는 그 단어의 의미만을 살펴본다면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곰곰이 살펴보면 어느 정도 공통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두 제도의 의미와 연관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II. 공유경제의 의미

1. 의 미

공유경제라는 용어는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다.³⁾ 그의 저서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에서 공유경제를 상업 경제(Commercial Economy)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생산과 소비에 기반을 둔 상업 경제와 달리 공유 경제는 이미 생산된 제품을 구성원 사이에서 공유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이라고 보았다.

공유경제에 관한 이론적 기초는 2004년 Y. Benkler의 “*Sharing Nicely: On Shareable Goods and the Emergence of Sharing as a Modality of Economic Production*”이라는 저서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Benkler에 의하면 카풀(carpool) 등 공유행위(sharing practices)가 특정 커뮤니티 내에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유가 가능한 것은 사회적 관계가 소위 가격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경제체제보다 공유윤리라는 점에서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단

3) 이성엽, 앞의 논문, 22면; 이다혜,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노동법적 쟁점”, 『노동법연구』, 제42호(2017), 405면.

순한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하는 공유가 아니라 개인이 가지는 자원을 통제하고 생산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⁴⁾

그래서 공유경제는 자산의 한 부분인 소유권, 이용권, 향유권을 주거나 받는 경제로서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 사용하거나 향유하는 등 협력적 소비⁵⁾를 통한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⁶⁾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공유경제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점이라는 점이다.

공유경제의 등장 배경 및 이념을 조금만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공유경제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사적인 소유권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⁷⁾ 구성원의 사회적 신뢰 속에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자원을 절약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 개념이 강화 내지 변화되어 같은 동산이라도 이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래비용의 감소가 일어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는 통신과 인터넷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터넷 기반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연결할 수 있고,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의 등장으로 초연결사회가 형성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모델로서의 공유경제가 논의되고 실현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공유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률적 뒷받침도 구축되어 있다. 이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각종 법적인 지원책은 이미 구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유경제의 의미가 더욱 클 수 있다고 사료된다.

4) 손상영·김사혁,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경제규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3면.

5) 박건철·이상돈, “도시·사회혁신을 위한 디지털 공유경제”, 서울디지털재단, 2016, 27면.

6) 손상영·김사혁, 앞의 논문, 7면.

7) 최진우, 앞의 보고서, 1면.

2. 공유경제와 상업경제

이렇게 인터넷 또는 SNS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의 유형을 살펴보면 기존의 유한한 자원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서비스 형태의 논의가 중심이다. 즉 유한성을 전제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소비대상은 유체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소비재를 전제로 하고 있고, 소비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상업경제와 공유경제의 의미와 내용이 다르다. 이에 관한 내용을 도표로 인용⁸⁾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상업경제	공유경제
비즈니스유형		B2C(Business to Customer) 기업(공급자) - 개인(소비자)	P2P(Peer to Peer), 개인(공급자) - 개인(소비자)
공급자 유형		전통적인 해당 분야 전문(중개) 기업(택시, 호텔 등)	정보통신(ICT)기반 스타트업 기업 마이크로 기업가(Micro Entrepreneur)
중개자	소속	(주로) 공급자 회사 (공급자 = 중개자)	(주로) 공유경제 전문 플랫폼 기업 (공급자 ≠ 중개자)
	재화의 연결	오프라인(직접/전화) 혹은 인터넷(앱 혹은 웹) 등	인터넷(앱 혹은 웹) 등 중심
	신규 기업 진입 장벽	높음	낮음
핵심가치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	저렴한 가격, 가치 있는 사용자 경험
신뢰확보수단		평판 및 과거의 거래 경험	인터넷 기반 직·간접 평가
(서비스) 활용단계		(공유경제 기업에 비해) 복잡	(상업경제 기업에 비해) 단순
기본철학		소유	공유

8) 송순영, “공유경제 서비스와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연구”, 정책연구 15-08, 한국소비자원, 2015, 34면; 이 상업경제와 공유경제를 상호 비교한 이 도표에 대한 인용허락을 저자(송순영)로부터 구두로 허락을 받았음.

	자원고갈	자원절약
	이윤창출	가치창출
	경쟁	신뢰
	과잉소비	협력적 소비

그런데 공유경제는 반시장, 반소유권, 반독점이라는 시장불신을 의미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⁹⁾ 자원낭비의 방지 등을 위한 시장보완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시장을 분석하여 시장의 비효율성 내지 낭비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리고 공유경제는 자연보존과 재생에도 도움이 되는 경제형태라고 평가되고 있다.¹⁰⁾ 전반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사회적 만족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¹¹⁾이라고 생각된다.

III. 지식재산권의 의미

1. 지식재산권의 성격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법에서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한 소유권과 유사한 성격의 권리로 파악하고 있다. 즉 준물권적 성격으로서 배타적·독점적 성격의 권리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대상은 추상적 형태의 객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요한 지식재산인 특허발명, 저작물, 상표의 경우가 그러하다.

9) 클라우스 슈밥,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송경진(역), 새로운현재, 2016, 228-231면.

10) 클라우스 슈밥, 앞의 책, 111면.

11) 권애라, “IT비즈니스 발전에 따른 공유경제 성장전망 및 시사점”, KDB산업은행, 2013, 81면.

그런데 권리대상으로서의 지식재산은 무한반복적으로, 다수가 동시에 이용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¹²⁾

그러나 지식재산권은 앞서 언급한 소유권의 열개 속에 기본적으로 간혀 있지만, 절대적 의미에서의 독점성 내지 배타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지식재산권 자체가 내재적 제한을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지식재산권은 그 속성상 공공성, 시간적 제약성이 다른 권리에 비해 강하다.

2. 권리자보호 위주의 법률규정과 법이론 구성

지금까지 지식재산법학의 역사는 개인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권리 대상과 권리보호범위 확대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지식재산권자의 상대방을 위한 장치도 많이 보장되었지만, 법률 개정의 역사를 보면 권리 대상의 확대와 권리범위의 확대가 정치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와서는 절차적인 면에서도 지식재산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더해지고 있다.

그리고 규정의 내용과 함께 해석론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법 분야에서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권리범위와 상표법이나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범위에 동일·유사한 범위까지 보호하는 것은 지식재산의 권리범위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왜 유사한 것까지 보호하여야 하는 점에 관해서는 다른 권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디자인보호법의 경우에는 제92조에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지만, 상표나 저작권의 경우 해석론을 통해서 권리의 보호범위를 넓혔다고 말할 수 있다. 유사 판단에 관해서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에서 일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만 유사한 범위까지 보호하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식재산권자를 더욱 넓게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이 또한 지식재산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 권리에 있어서는 권리자 보호 위주의 법률규

12) 공유지의 비극이론이 지식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해서는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정과 법이론 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 분야에서 살펴보면 기술적 보호조치라는 것도 결국 저작물 그 자체가 아니라 저작물보호조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저작권침해로 보겠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만큼 보호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지식재산권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가 간접침해제도이다. 대부분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직접침해를 의미하지 간접침해라는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의 영역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도 일정한 행위를 침해의 범주에 포함시켜 마치 직접 침해한 것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강학상 간접침해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범위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점이 다른 재산권과 다른 점 중의 하나이다.

3. 최근의 경향

이러한 권리자보호 강화의 경향은 전통적인 실체적인 지식재산권법 이외의 법률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불법행위의 특수한 유형으로서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의 확대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2013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일반 조항에 가까운 내용인 차목을 신설하였다. 차목¹³⁾의 신설의 배경이 된 소위 ‘네이버사건’¹⁴⁾과 같이 민법의 일반 불법행위 조항을 기반으로 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즉 불확정 개념이고 애매한 형태의 일반 불법행위 조항을 통해서 특정 행위를 불법행위로 지칭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범위를 확대시켰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리고 세계적 경향이기도 하지만 영업비밀보호에 중점을 두는 인상을 받

13) 최근 차목의 적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4) 대법원 2010.8.25.자 2008마1541 결정; 대법원 2012.3.29.선고 2010다20044 판결.

는다. 미국,¹⁵⁾ 유럽연합,¹⁶⁾ 일본¹⁷⁾ 등에서 영업비밀보호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법령 개정과 처벌의 확대 등을 통하여 영업비밀을 거의 지식재산에 가깝게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에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개정하여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완화시켜 영업비밀보유자를 더 쉽게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양적 보호의 확대와 질적 보호수준의 강화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의 유형과 보호범위의 확대 및 보호수준을 강화하려는 경향은 역설적으로는 지식재산권자가 타인과 (또는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보여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IV. 공유경제와 지식재산

1. 지식재산과 공유경제와의 접점

공유경제가 이용의 활성화, 협력적 소비, 사회적 신뢰,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이라고 전제한다면 지식재산과 공유경제는 어떤 곳에서 접점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념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식재산과 공유경제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은 아무래도 주로 창작을 전제로 하여 발생한 권리들이라고 생각된다.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 창작행위를 전제로 한 지식재산권이라고 생각

15) 미국에서는 민사사건은 주법인 Uniform Trade Secrets Act with 1985 Amendments; UTSA에 의하고 형사사건은 연방법인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EEA)에서 다루었으나 2016년에 이를 통합한 연방법인 The Defend Trade Secrets Acts of 2016, DTSA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법률의 특징은 민사구제와 형사 제재의 강화에 있다.

16) DIRECTIVE (EU) 2016/9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참조.

17) 2016년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였다.

된다. 즉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사회에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 대가로서 명예와 찬사와 함께 법적으로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고 재산권으로서 보호받는 형태와 공유경제가 서로 교차점이 있다고 생각된다.¹⁸⁾

그러나 영업표지에 대한 보호를 주로 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공유경제와의 상관성을 가진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영업표지의 보호대상 또는 보호법익은 신용 내지 고객흡입력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므로 이를 공유하자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부정경쟁행위도 사실상 지식재산권에 유사한 형태로 보호하지만 불법행위로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경제와의 상관성을 논의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영업주체혼동야기행위, 상품주체혼동야기행위, dead copy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협력적 소비 내지 자원 이용의 효율성과는 공통점을 찾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근대법학 내지 법이 상정한 인간상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인간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¹⁹⁾ 조금 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합리적인 계산을 하는 인간을 전제로 인간의 이기심을 실현하는 제도 중의 하나가 재산권제도²⁰⁾인지도 모르겠다. 현대사회에서 와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가 지식재산분야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지식재산제도를 살펴보면 지식재산권은 다른 재산권에 비해서 본질적으로 행사에 제한을 두어 왔다. 대표적인 재산권인 소유권에 비해서 지

18) 토론 중에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공유경제의 이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공유경제는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효율적이고 적합하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잘 활용되기 위하여 저작권 등을 포기하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인터넷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19) 정상조, “인터넷 산업의 발전과 규제”, 『저스티스』, 제121호(2010), 767면.

20) 재산권의 발생과 인간의 이기심과 관련된 적절한 예로서는 박준우, 『퍼블리시티권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v~vii면.

식재산권 자체가 사회적 제한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식재산 자체가 공익적 성격의 재산이고 대상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빨리 이용될수록 사회에 유익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²¹⁾

형식적으로 파악하면 공유경제와 지식재산은 상이한 형태의 제도인 것 같지만 공통적인 지향점은 있다고 사료된다. 공유경제는 경제생활이라는 실생활에서의 경제활동이 그 대상이라고 한다면 지식재산제도는 규범의 영역에 있는 것이어서 바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지식재산권 자체, 또는 지식재산권의 객체도 시장에서는 일종의 거래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유경제의 실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하에서는 지식재산권법 내에서의 공유경제 이념과 유사한 제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지식재산의 제한의 형태로 나타나는 점인데 이는 거래의 대상이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은 법령상의 제도로서 법률에 의하여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는 제도적 성격이 강하다. 이에 반하여 공유제도는 시장의 분석을 통한 비효율적인 면에 대한 개선책의 하나로 인터넷이나 SNS를 기반으로 하여 나온 것으로서 새로운 상업형태 또는 비즈니스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내용 중에서 공유경제와 어느 정도 방향성이나 근접성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되는 것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공유경제 지향 법제도

(1) 표준특허

표준특허란 예를 들어 정보통신 분야에서 정보의 공동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정보의 생산, 가공 등 정보통신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의 호환성과 상호연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주체 간에 합의된 규약을 실현할 때

21)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예가 도서관 제도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책, 비디오 등을 대여한 대여점 제도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전통은 이미 유럽의 역사에서 일찍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에 해당 특허기술을 침해하지 않고는 해당 표준기술을 구현할 수 없는 특허를 말한다.²²⁾ 이러한 표준특허는 FRAND 선언과 공정거래와 관련이 있고 반독점이라는 표지는 있으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특허사용을 인정하겠다는 의미이다. 표준특허는 기본적으로 경쟁법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나 특허제도의 framework속에 간혀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유경제와는 연관성은 낮아 보인다.

(2) 강제실시

특허법상의 강제실시권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심판에 의하여 특허발명을 강제로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²³⁾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가제도적으로 실시보장을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 우리 특허법 제106조의2, 제107조에서 강제실시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시장상황 내지 국가의 비상상황에 따른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공유경제와 이념적 정합성은 없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시장의 조정이라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된다.

(3) 저작권자의 제한

저작권의 특징 중의 하나가 저작권제한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다른 재산권과 달리 저작권도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지만 내재적 제한으로서 저작권법에서 아주 자세하고 광범위하게 저작권자의 저작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저작권의 역사를 반영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권자의 권리행사 중 특히 경제적 수익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하고, 그 상대방인 문화수요자 내지 저작물이용자에게 자신의 의도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어서 공유경제의 이념과 어느 정도 정합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공유저작물의 이용과 특히 현대 사회에서 발달된 디지털 저작물(digital works)과 관련해서는 공유경제의 이념적 모델을

22) 이수진, 『표준특허와 FRAND라이선스』, 동방문화사, 2015, 3-4면.

23) 윤선희, 『특허법』, 법문사, 2007, 705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4) 공정이용(Fair Use)

앞서 언급한 저작권재산권의 제한보다 더 공유경제의 이념에 실천적으로 부합하는 것은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규정된 공정이용제도이다. 이 제도는 저작권법의 목적이 저작자의 보호에도 있지만, 다른 한편 문화발전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앞선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문화적 유산을 가능한 한 자유롭게 이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라는 것이다.²⁴⁾ 이는 잘 알다시피 영미법에서 개별 사례에 나타난 법리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인데 앞서 언급한 저작권재산권의 제한제도보다도 더 포괄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것이어서 저작물시장에서의 기능은 공유경제의 이념과의 정합성이 더 많은 제도라고 생각된다.

(5) 보호기간

지식재산제도의 가장 특징 중의 하나가 보호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다. 이러한 보호기간제도의 의미는 지식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에 따른 내재적 제약이다.²⁵⁾ 문제는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소위 공유(公有)가 된다. 따라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한 유형에 포함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영원한 권리라고 생각되는 소유권 등에 비하면 권리보호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저작물 등 지식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시차를 둔 공유경제’라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보면 지식재산제도에서 보호기간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공유경제제도로부터 시사점을 받을 수 있다.

(6) 공공저작물제도(CCL)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공공저작물제도라고 생각

24) 오승중, 『저작권법강의』, 박영사, 2016, 367면.

25) 정상조 편, 『저작권법주해』, 박영사, 2007, 599면.

된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가진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흔히 공공누리제도²⁶⁾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면 공공저작물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체가 되지만, 이때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제생활에서 사경제의 주체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공유저작물제도가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의 한 유형으로서 저작물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경제의 지향점과도 정합성이 부분적으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잘 알다시피 공공저작물제도는 미국의 CCL제도에서 그 시사점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었는데 CCL제도의 인류의 창작물을 공동자산화하자는 의미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7) 오픈소스

공유 경제가 저작권 분야에서 잘 적용된 예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생각된다. 이미 알려진 대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다운로드와 프로그램의 변형을 위한 제작자 이외의 자의 접근이 가능하며, 프로그램 개발자는 처음부터 개인적인 이익이나 저작권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유를 목적으로 제품을 설계한다. 이러한 예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Linux’이다.²⁷⁾

3. 공유경제이념과 부합되는 실천적인 면

(1) 기술거래시장

실제로 특허출원과 등록을 받아 놓고 실시되지 않는 휴면특허라든지 휴면

26)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이 만든 공공저작물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http://www.kogl.or.kr/index.do>>, 검색일: 2018.3.20.

27) 박경신, “유럽에서의 공유경제와 공유저작물의 논의”, 뉴스레터 저작권위원회, 2016.

상표를 시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활용하도록 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면 이것 역시 공유경제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의 기술이전을 받는다는지 또는 필요한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이러한 시도는 많이 있었고, 논의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기술이전 마켓트 내지 기술이전시장 플랫폼을 만들어 단순한 시장논리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 사이에 일치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기존의 주말의 Flea market의 개념에서 발달된 형태의 기술거래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방호표장제도 도입의 금지

우리나라의 상표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상표법에는 방호표장 제도가 있다. 방호표장제도는 저명한 기본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로서 기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비유사상품에 기본등록상표의 권리자가 사용 의사 없이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²⁸⁾ 즉 일본의 방호표장제도는 미리 상표만을 선점하고자 하는 것이거나 또는 사용 의사 없이 방어의 관점에서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므로 권리를 과잉 행사한다는 생각이 든다. 자원의 낭비방지라는 점에서 보면 권리의 낭비(낭용이 아니라) 내지 과잉행사하여 다른 사람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상표를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상표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우리가 흔히 불사용취소심판이라고 부르고 있다.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등록주의의 실시로 인한 부정적인 면을 시정하고

28) 문삼섭, 『상표법』, 제2판, 세창출판사, 2004, 183면.

자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표의 실수요자가 이 상표의 사용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며, 상표의 사용권자에게 상표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²⁹⁾

4. 공유경제이념에 부합되는 이론적 지원

(1) 희석화이론에 대한 비판 근거

앞서 언급한 공유경제의 이념 내지 실천적인 면들은 지식재산권법 분야에서 특히 영업표지와 관련된 논의에서 이론적 기초로서 등장하는 희석화이론에 대한 비판 근거가 될 수 있다. 혼동이론에 대비되는 이 이론도 역사적 기반과 현실적 필요성에 그 근거가 있었다. 상표권 보호범위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예를 들어 당사자의 상품 사이에 전혀 경쟁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전혀 혼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보호해 달라고 하는 점이 희석화이론의 특징이다. 앞서 공유경제와 지식재산권의 분야에서는 주로 창작계열의 권리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희석화이론에 따르면 혼동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가치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공유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다소의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대기업, 다국적기업 등을 위한 이론이라는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지식재산권은 독점권이라는 개념에 대한 재구성

지식재산권의 대상 역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역시 권리대상법정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이라는 개념을, 특허법에서는 특허발명이라는 개념을, 상표법에서는 상표라는 권리대상을 개별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필자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을 저작물이

29) 김원준, 『상표법개론』, 피앤씨미디어, 2017, 251면.

라고 하지 않고, 정보 또는 콘텐츠라는 개념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콘텐츠와 정보라는 개념 속에는 재산권의 대상이라는 인상이 다소 약하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공유³⁰⁾할 수 있다 또는 공유하여야 한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 수 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콘텐츠라는 용어 속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고, 정보라는 개념 속에는 독점해서 안 된다는 생각, 즉 전파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식재산권은 독점권이라는 사상, 또는 법이론적 기반을 재검토할 수 있다.

(3) 권리소진이론에 대한 재검토

지식재산권법의 역사를 보면 문화소비자 내지 지식재산권자의 반대편에서 있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대항 수단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권리소진이론이었다고 생각된다. 비록 우리 저작권법에만 규정되어 있지만 특허법, 상표법 등 모든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관통하는 중요한 이론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 근거에는 소유권과 지식재산권과의 충돌 문제, 지식재산권이 유체물에 담겨져 거래된다는 생각 그리고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가 재산권이라는 생각 등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권리소진이론을 회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즉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지식재산권자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서 언급한 지식재산제도의 최근 동향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 있다.

지식재산권자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일순간 제거하고 상대방은 지식재산권을 의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권리소진이론이었기 때문에 공유경제와의 이념적인 정합성은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³¹⁾

30) 이때의 공유는 public domain의 개념인지 또는 sharing의 의미인지에 대해서 엄밀하게 검토하여야 하지만, 이념적 기반성은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4) 모든 것을 권리화하려는 것을 방지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지식재산의 특징 중의 하나는 모든 것을 권리화하려는 경향이 다른 권리에 비해서 강하다고 생각된다. 권리 대상의 형태에 따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모든 것을 권리화하려는 것은 지식재산권제도의 맹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어쩌면 일말의 여지도 없이 모든 대상에 대한 권리화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 지식재산권제도일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경향은 권리자에게 인센티브의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나친 권리화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의 억제 내지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경제의 이념 내지 실천방안에 맞게 법이론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5. 플랫폼 역할에 대한 감시

지식재산제도나 공유경제가 모두 고도화되면 플랫폼³²⁾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플랫폼 경제는 이미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관련하여 시스템연구자, 조작자, 구매자, 플랫폼제공자 등이 관여될 수 있다. 플랫폼제공자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이거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업일 가능성이 많아서 정보유통이나 권리의 과점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³³⁾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인터넷산업과 관련하여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³⁴⁾ 마찬가지로 공유제도와 지식재산제도가 결합하면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이 단순한 경제적 내지 사회적 편리성을 넘어서서 특정 산업의 플랫폼이 형성된다. 플랫폼 형성의 의미는 시장에서의 독과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³⁵⁾ 아마도 시장성

31) 토론 중에 권리소진이론을 디지털저작물(digital works)에도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아직은 법리적인 검토나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32) 이다혜, 앞의 논문, 406면.

33) 福井建築, “人工知能と著作権2.0ロボット創作の拡大で著作権制度はどう変容するか”, 『コピライト』, Vol.55 No.652(2015), 18頁.

34) 윤중수, “인터넷 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 및 활성화 방안”, 『저스티스』, 제121호(2010), 738면.

이 보이면 자본이 집중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인터넷산업과 관련해서 구글, 아마존, IBM 등의 독과점형성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공정거래와 계약법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국가의 플랫폼에 대한 감시기능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6. 시사점의 등장

최근 3D프린팅의 등장에 따라 3D프린팅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문제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3D프린팅은 디지털제조(digital Fabrication)³⁶⁾를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만큼 쉽게 직접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회를 펍 사회(Fab Society)라고 부른다. 그런데 디지털 제조는 하드웨어 설계와 아이디어를 온라인 공유사이트에 올려 공유정보로 만든 다음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 개인이 직접 제조하는 방식을 말한다.³⁷⁾ 이에 관한 대표적인 사이트가 Shapeways,³⁸⁾ Thingiverse³⁹⁾ 등에서 User사이에 서로 창작한 3D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도 같이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소위 메이커 운동(Makers Movement)이라고 하는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스스로 만들어 제작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이러한 사람들의 운동을 메이커스 운동이라고 한다. 물론 여기에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행사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3D프린팅의 등장과 운영은 기존의 지식재산권제도에도 동요를 가져오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이념과도 부합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개

35) 윤종수, 앞의 논문, 739면.

36) cordis, "Final Report Summary—DIGINOVA (Innovation for Digital Fabrication)", cordis, <http://cordis.europa.eu/result/rcn/157412_en.html>, 검색일: 2017.8.21.

37) 이대호, "디지털제조: 이해와 정책 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리포트, 2013, 3면.

38) <https://www.shapeways.com/>

39) <https://www.thingiverse.com/>

인적으로는 지식재산제도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공유경제와의 정합성을 나타내 주는 시금석의 역할을 3D프린팅산업이 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V. 나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판단된다. 아직 다 방면에서 사업화하고자 하고 최근의 사회적 기업과 연관되어 새로운 경제모델 내지 경제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파악되기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공유경제는 플랫폼 비즈니스이고 수요에 따른 비즈니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규제중심의 논의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공유경제를 억압하는 형태의 논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즉 법제도 때문에 공유경제가 제한되거나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자산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다. 그럴수록 공유성도 강하다는 의미도 되고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크다는 점이다. 즉 양 제도의 상관성이 서로 있다고 생각된다. 공유경제와 지식재산의 연관성을 논의한다고 해서 이념적으로 ‘로크’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유경제와 지식재산권제도가 완벽한 정합성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소한 다른 재산권제도와 달리 일부에서 이념적 접점 내지 공통성이 있거나, 다른 재산권보다 많은 점에서 지향점이 같다고 사료된다.⁴⁰⁾ 그렇지만 지식재산제도에서 타인의 지식재산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다른 창작물을 창출하기 위한 자극제 또는 기초로서 이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경제의 공유적 성격과는 지향점이 바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40) 이성엽, 앞의 논문, 19면.

필자의 생각으로는 현 단계에서는 공유경제와 경제법과의 관계, 즉 공정거래와도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공정거래는 반독점 내지 경제활동의 공정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경제 질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공유경제는 권리의 독점적 성격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협력적 소비 내지 자원의 낭비 방지라는 경제 형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소 다르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대로 공유경제가 고도로 발전하거나 공유경제가 지식재산제도와 결합하여 나타날 때에는 거대 자본의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닥쳐올 고도화된 지식재산 사회에서는 지식재산제도에 관한 지금까지의 이념과 이론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라는 기본 이념의 껍질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권리를 이용할 만큼만 이용하게 하는 방법, 정확하게는 소비할 만큼만 소비하게 하는 방법을 고안해 낼 필요도 있다.

공유경제와 지식재산권 제도 모두 최근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는 소위 4차 산업혁명제도와도 연관성이 있다. 기술과 과학의 급격한 발전은 공유경제와 지식재산권제도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융합적인 형태가 되든지 또는 공유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수단으로서 지식재산제도가 될지도 모르겠다.

공유경제의 이념에 부합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독특한 교통수단 이용방법이 대중교통 환승제도이다. 같은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 마을버스 등이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교통비의 최대한을 정하고 서로 환승에 따른 개별 비용을 받지 않고 총비용으로 결제하고, 이를 결합된 교통수단의 회사가 서로 비용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이용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특징은 비용의 최대한을 설정함으로써 몇 차례의 환승에 따른 개별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지고 늘어났고, 운송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수익이 늘어났다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즉 사회전체적으로 대중교통의 수익성과 이용빈도가 늘었다는 것인데 이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이다. 대중교통환승제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은 이미 교통

수단의 공유경제를 체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식재산은 공유지의 비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유경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라고 생각된다. 어느 부분에서는 무한대로의 공유가 가능하다.⁴¹⁾

그리고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법학 또는 법조계의 임무는 다음의 말로서 대체하고자 한다.

“법조계에는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해석론이나 사후약방문식의 대처를 뛰어넘어 여러 전문분야들과의 협력 작업을 통해 공유경제의 미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예측’하여 ‘규제’ 내지 ‘협력’의 ‘방향’과 ‘속도’를 잘 정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⁴²⁾

그리고 선행연구의 성과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학자는 아니지만 지식재산권제도를 정부의 혁신에 우호적인 규제라고 파악하는 견해⁴³⁾도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제도가 공유경제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일정 부분 동일한 지향점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의 상관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더 연구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41)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도 이러한 정신이 일부 발견된다. 예를 들면, 제65조의8(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의 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 등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 제1항 본문 및 제4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을 철회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5조의11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등의 기간 동안 신청자 외에 사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등의 방법은 제3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에 따른다.

42) 최진우, 앞의 보고서, 4면.

43) 이성엽, 앞의 논문, 27면.

참고문헌

〈단행본(국내 및 동양)〉

- 김원준, 『상표법개론』, 피앤씨미디어, 2017.
문삼섭, 『상표법』, 제2판, 세창출판사, 2004.
박준우, 『퍼블리시티권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오승중, 『저작권법강의』, 박영사, 2016.
윤선희, 『특허법』, 법문사, 2007.
이수진, 『표준특허와 FRAND라이선스』, 동방문화사, 2015.
클라우드 슈밥,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송경진(역), 새로운현재, 2016.

〈학술지(국내 및 동양)〉

- 윤종수, “인터넷 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 및 활성화 방안”, 『저스티스』, 제121호(2010).
이다혜,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노동법적 쟁점”, 『노동법연구』, 제42호(2017).
이성엽,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 『행정법연구』, 제44호(2016).
정상조, “인터넷 산업의 발전과 규제”, 『저스티스』, 제121호(2010).
福井建築, “人工知能と著作権2.0ロボット創作の拡大で著作権制度はどう変容するのか”, 『コピーライト』, Vol.55 No.652(2015).

〈연구보고서〉

- 권애라, “IT비즈니스 발전에 따른 공유경제 성장전망 및 시사점”, KDB산업은행, 2013.
박건철·이상돈, “도시·사회혁신을 위한 디지털 공유경제”, 서울디지털재단, 2016.
손상영·김사혁,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경제규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송순영, “공유경제 서비스와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연구”, 정책연구 15-08, 한국소비자원, 2015.
이대호, “디지털제조의 이해와 정책 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리포트, 2013.
최진우, “공유경제의 등장과 규제 이슈”, 한국정보법학회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한국정보법학회, 2014.

The Sharing Economy and Intellectual Property

Kye Seungkyoon

This article is intended to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ing economy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Sharing economy began with an ideological reflection on the harmful effects of capitalism, such as wasting resources and inefficient economic phenomena, while being meaningful in the history of the economy. However, the sharing economy does not contradict the ownership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ppears disconnected from the sharing economy by discussing property rights and its utilization of new forms of property as technology and science developing.

Howeve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sharing economy, and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re closely connected. As intellectual property has developed, it can be said that the local, ideological sharing economy has become global, more active and a kind of industry. Unlike other property rights, for example, the ownership to recognize exclusive rights to material stuff,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lready has its own equivalent in terms of its nature to the ideologies of a sharing economy.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has already something in common with sharing economy, such as limitation of copyright, enforcement of patent rights, protection periods, public works, open source, clouding, and library systems, which mean sharing knowledge.

Keyword

Sharing Economy, Intellectual Propert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haustion Theory, Patent, Copyright, Platform